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 진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03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7조의3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중오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2. 12.

다. 회 부 일 : 2024.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7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의3제1항).
-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함(안 제7조의3제2항).
-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 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 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 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 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 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2항을

	<u>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 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u>
--	--

다. 검토사항

-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¹⁾ 등을 이용해 유명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입장권등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의 부정판매, 이른바 암표 매매가 성행²⁾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 제4호³⁾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벌칙 수준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벼워 실효성이 없고, 최근 문제가 되는 온라인에

-
- 1)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2) 문화일보, “‘매크로’ 돌려 수십배 폭리…예매 못한 전팬, 울며 겨자먹기 구매”, 2024. 1. 24.. 국민일보, ““16만원 임영웅표 100만원에”...가요계 온라인 암표 골머리”, 2024. 1. 8. 파이낸셜뉴스, ““페이커 경기 300만원에 판다”..월드컵 결승전 암표 “부르는 게 값””, 2023. 11. 15. 등 기사 참조
-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근거 법조문	범 칙 행 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 제4호(암표매매)	홍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u>16만원</u>

서의 압표 매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온라인 압표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공연법」(공연 입장권)⁴⁾,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 경기 입장권)⁵⁾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 이용권)⁶⁾ 등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처벌 규정이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그러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

4)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6)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진흥법”이라 한다)의 경우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스포츠 경기가 「공연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아 압표 제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문체부장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압표 제재의 사각지대였던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건전한 이스포츠 관람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공연법」 등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벌칙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 것임.

○ 다만,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동법 개정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바 있는데, 이 중 김준혁의원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구매·판매를 금지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소위에 계류 중인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법안들과 같이⁸⁾ 압표 판매의 처벌 강화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86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298호

8) 동법 개정안 외에도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압표 판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참고 2] 참조).

[참고 1: 입장권등 부정판매 관련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민형배의원	- 매크로 무관 모든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 부정판매 입장권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부령에 위임 - 부정판매 벌칙(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김준혁의원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유형 세분화(방해, 구매, 판매) - 신고포상금 지급 - 이득액별 처벌기준 세분화(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몰수·추징 근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바른 이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스포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로, 동법 외에도 [참고 2]에서 볼 수 있듯이 압표의 제재와 관련하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 입장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제안되었음.

[참고 2: 압표 매매 관련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구자근의원 등 12인		2025.2.26.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운동경기 입장권</u> 등의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8.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u>영화 입장권·관람권</u> 등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2024.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u>체육시설 이용권</u> 의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2024.1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암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21.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4.12.1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암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연희의원 등 19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구매 금지	2024.1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2024.12.10.

문 의 처

02)6788-5384